

감사원

통보

제 목 자산유동화 대상 회사체 연체정보 집중·관리방안 미비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계기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용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라 한다)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금융기관¹⁾으로부터 기업의 연체²⁾정보 등 신용정보³⁾를 등록받아 집중 관리 및 활용하면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용정보관리규약」(은행연합회 규약)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회사체, 대출금 등의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정보관리규약」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은행연합회의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등록된 연체정보를 토대로 해당기업의 신용등급을 부도등급으로 조정하고 대출(신규 또는 기간연장) 취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⁴⁾ 부실 대출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

1)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정보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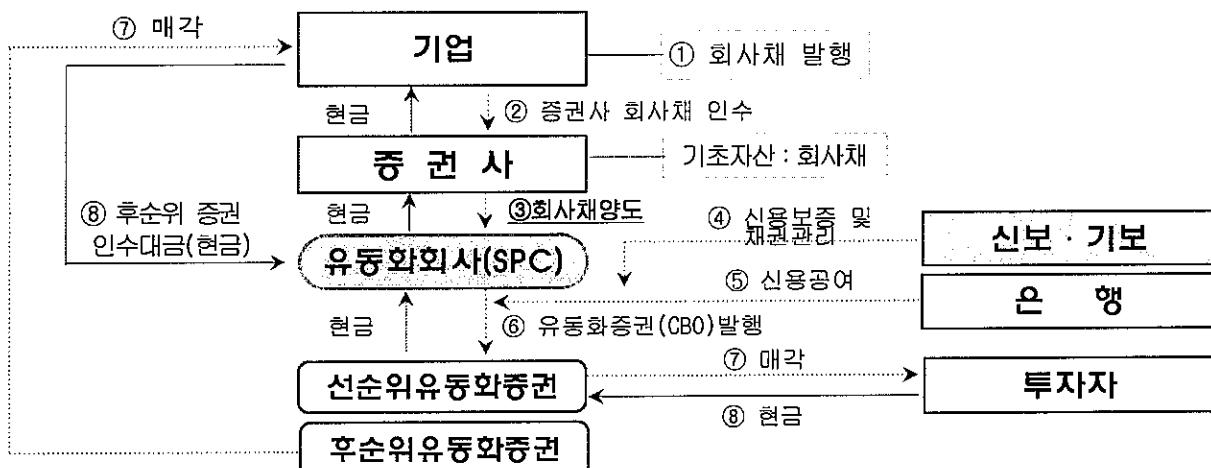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 제25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및 회사채 등의 연체정보를 집중하고 있으므로 「자산유동화⁵⁾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 등으로 채권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 등 비금융기관으로 변경되면 유동화 대상채권의 연체정보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법 등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⁶⁾이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SPC의 채권관리회사인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로 SPC에 양도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같은 규약 제26조에 따른 제재(연체정보 미등록 등 규약 위반 시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없으므로 위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보”라 한다)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자산담보부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이하 “P-CBO”라 한다) 사례와 같이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채가 SPC 등 비금융기관으로 양도된 이후에는 SPC의 채권관리회사로서 해당 회사채의 연체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신보·기보에서 이 연체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

-
- 4)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여신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제80조,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6조 및 제504조 등 내부규정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된 기업은 신용등급이 부도등급인 ‘C’이하로 조정되고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연장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5) 자산유동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 등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 6) 자산유동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SPC는 금융기관 등에 유동화 대상 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함

- P-CBO: 중소기업 또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증권회사로부터 SPC가 양도받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따라서 금융기관이 P-CBO 대상 회사채의 연체정보를 알지 못해 부실 대출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등에 의해 SPC에 양도된 회사채의 연체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8 조의 규정을 ‘자산유동화 등에 의해 채권자가 SPC로 변경된 경우에는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기업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은행연합회에서는 P-CBO 대상 회사채의 연체정보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은행연합회로 하여금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5. 4. 1.~4. 28.) 중 신보·기보의 P-CBO 대상 회사채에서 2012. 1. 1.부터 2014. 12. 31. 현재까지 연체가 발생한 490개 기업(신보 440개, 기보 50개)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은행

자료를 표본으로 확인)의 신용등급 부여 및 대출 취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별표 1] “신보 P-CBO 대상 회사채 연체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미조정 및 연체발생 이후 대출 취급 명세” 및 [별표 2] “기보 P-CBO 대상 회사채 연체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미조정 및 연체발생 이후 대출 취급 명세”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 등 121개 기업⁷⁾(신보 107, 기보 14)의 신용등급⁸⁾을 대출 취급이 가능⁹⁾한 등급(‘B’ 이상)으로 판단하였고, □□ 주식회사의 경우 연체발생일인 2014. 9. 28.¹⁰⁾ 이후인 2014. 10. 7. 신용등급 ‘A-’인 상태로 150백만 원의 대출을 신규로 받는 등 7개 기업(신보 6개, 기보 1개)이 연체발생일 이후에 신규 또는 기간연장 등 총 17,028백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2015년 3월 말 현재 모두 부실화되어 최대 3,148백만 원¹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앞으로도 P-CBO 대상 회사채 연체정보 미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 등에 의해 SPC에 양도된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로 하여금 「자산유동화에

7) 총 490개 기업 중 나머지 369개 기업은 다른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B’ 미만의 신용등급이었음

8) 회사채는 「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 “신용정보관리기준”에 따라 연체 발생 즉시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되므로 해당 연체정보가 등록되었다면 연체발생일이 속한 달의 월말 기준 신용등급이 ‘C’로 조정되어야 함

9)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업무 취급세칙」 제123조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B’ 이상인 업체에 대출 취급이 가능

10) 위 회사는 2011. 9. 28.에 10억 원의 회사채를 3년 만기로 발행하였으나 만기일인 2014. 9. 28.에 연체 발생

11) □□주식회사는 신규대출이므로 손실액 150백만 원 전액이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6개 기업에 대한 대출은 대출기간 연장으로 채무자 재산압류, 경매 등 채권보전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손실이 늘어났을 가능성성이 있어 최대 3,148백만 원으로 표현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유동화 등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연체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될 수 있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연번	회사명	회사채 발행 내역			연체 발생일	연체발생일이 속한 달의 월말 기준 신용등급	연체발생 이후 대출 취급 내역 ¹⁾				
		발행일	만기일	금액			구분	취급일	금액	취급당시 신용등급	건전성 분류 ²⁾
101	-	2012.3.28	2015.3.28	500	2014.11.20	B					
102	-	2013.11.20	2015.11.20	1,600	2014.11.27	B					
103	-	2013.4.25	2016.4.25	1,500	2014.11.27	BB					
104	-	2013.9.12	2016.9.12	1,000	2014.11.27	BB					
105	-	2013.10.28	2016.10.28	1,000	2014.12.15	B					
106	-	2014.11.10	2017.11.10	1,500	2014.12.19	BBB+					
107	-	2013.3.28	2016.3.28	500	2014.12.28	BBB+					
연체 발생 이후 대출 취급한 6개 기업 계									16,928		3,060

- 주: 1. 연체발생일 이후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에 따라 신용등급 'CCC+' 이하인 상태에서 취급한 대출은 제외. 기간 연장, 대환 등 대출은 연장으로 구분
 2. 2015년 3월 말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
 3. 2015년 3월 말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액
 4. 토성철강은 2013. 5. 3.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총 14,316백만 원의 대출을 연장하였음

자료: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은행 제출 자료 재구성